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월 6일

나. 발 의 자: 박세채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원섭, 김정도, 김춘남, 안주찬, 이명희, 이정희, 정지원, 추은희 의원 (12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월 15일
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박 세 채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시민행복주차장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의4)

○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(별표 7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109조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행복주차장과 「지방세법」제109조 2항[1]에 따른 비과세 사항을 명문화하여, 시민들의 법적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제도적 근거의 확보로 행정집행의 신뢰와 효율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--

1)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(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**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** 다만, 다음 각 호의 **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**

1.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
2.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

- 다만, 시민행복주차장 조성 시 예상 이용률, 주차 피크타임 및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, 조성 후 SNS·지도 앱 연동 등으로 적극적 이용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더불어, 집행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주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계획 수립으로 주차장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,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이용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: 생 략

5. **토 론 요 지**: 생 략

6. **소수의견의 요지**: 없 음

7. **심 사 결 과**: 원안가결